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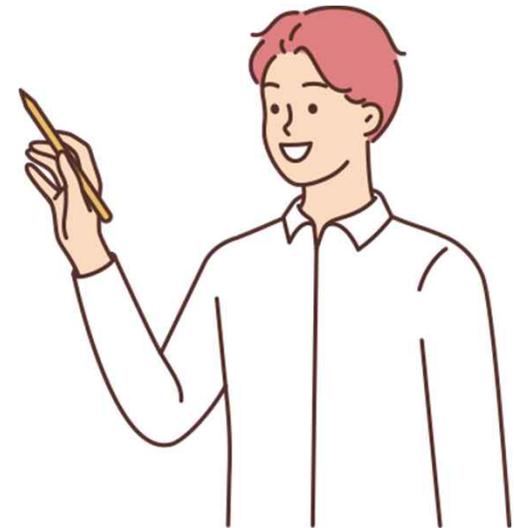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2023. 10. 4

**K-BIZ** 중소기업중앙회

1

# 납품대금 연동제



# 납품대금 연동제 · 조정협의 도입연혁

## 납품대금 조정협의 도입 및 범위 확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009.4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도입

2013.5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2019.1  
수·위탁거래까지  
제도 적용 확대

2011.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부여

2018.1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제도 적용 확대

2020.10 (상생협력법)  
2022.1 (하도급법)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2022.12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상생협력법)

2023.10.4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2023.6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하도급법)

### 의의

- (연 동 제) 기업간 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 (조정협의)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범위 지속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 근거 법령 및 적용대상

▶▶ 연동제 · 조정협약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제도의 명칭, 적용 대상 등이 상이 (주요내용은 동일)

|      | 상생협력법(중기부)   | 하도급법(공정위)   |
|------|--|---|
| 적용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위탁거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거래</li> </ul>   |
| 기업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위탁기업</b> 모든 기업<br/>- (업종)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li> <li><b>수탁기업</b> 중소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원사업자</b>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정규모 이상)<br/>- 제외대상 업종 * 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br/>· (제조·수리)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br/>·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br/>· (용역)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li> <li><b>수급사업자</b> 중소기업 (단, 원사업자 매출액 &gt; 수급사업자 매출액)</li> </ul> |
| 거래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거래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함</li> </ul> <p>* 위탁기업과 위탁내용의 관계가 30가지 가능</p> <p>※ 수·위탁거래는 모든 하도급거래를 포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업(業) 유형 7가지로 제한</li> </ul> <p>※ 원사업자의 업(業)에 따른 위탁만 가능<br/>예) 자동차제조업자가 작업복제조위탁을 할 경우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되나 하도급 거래에 해당안됨</p>  |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란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근거법령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법 제3조2항 (시행 : '23.10.4) \*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거래 약정부터 적용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 적용대상 거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하도급)대금이 기준

**Q**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지?

**A**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Q** 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A**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

##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 적용 예외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

(ex) 1차 금속 제조업(C24)은 3년 평균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 당 거래금액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 법 위반 시 제재

- (서면 미발급)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연동 대금 미지급)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부과 가능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 법 위반 시 제재

#### >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 개선요구, 시정조치,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예시

- ▶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 법 위반 시 제재

#### >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 (예시)
-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2

##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실무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참고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첨부 1】

###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기재사항           |
|-------------------------------------|----------------|
| 1. 물품등의 명칭                          |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
| 3.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                |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br>비교시점: |
| 5. 조정요건                             |                |
| 6. 조정주기                             |                |
| 7. 조정일                              |                |
| 8. 조정대금 반영일                         |                |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
| 10. 기타 사항                           |                |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 수탁기업 확인 |
|----------|----------------|-----------|---------|---------|
|          |                |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물품등의 명칭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등)의 명칭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1. 물품등의 명칭 | 동 케이블    |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연동 대상 원재료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주요 원재료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
  - \*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 (원재료의 범위) 천연재료(금, 철, 동 등),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등), 가공물(금속강, 금속판, 골재 등), 중간재(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등) 등을 포함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2. 연동 대상 원재료 | 동(銅)     |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기준지표’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LME, 한국은행 지표 등)가 원칙
- ‘기준가격’이란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 |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기준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http://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http://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http://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http://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 (기준가격 예시)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인 경우,  
'23년 1월 기준가격은 LME 고시가의 '23년 1월 동 가격인 10,000원/kg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Q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③ 그 밖에 약정서, 원가 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준시점: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약정 체결일)의 전월 (평균가격)</li><li>-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평균가격)</li></ul> |

(예시) '23년 1월 1일 약정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한 경우, 이전에 대금 변경이 없었으므로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평균가격),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평균가격)이 됨

##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납품대금 조정요건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 변동률의 범위는 0 ~ ±10%의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함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5. 납품대금 조정요건 | ± 3%     |

(예시)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1% → 조정요건 미충족으로 납품대금 연동 미시행,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5% → 조정요건 충족(3% 이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시행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납품대금 조정 주기 및 조정일

-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및 날짜를 기재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6. 납품대금 조정주기 | 1개월      |
| 7. 납품대금 조정일  | 매월 1일    |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8. 조정대금 반영일 | 매월 1일    |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가이드북을 참고)

| 구분                  | 기재사항(예시)   |
|---------------------|--|
| <p>9. 납품대금 연동산식</p>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purple; padding: 5px; margin: 5px;"> <b>변경 단가</b><br/>(29,000원/EA)         </div> <span style="margin: 0 10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teal; padding: 5px; margin: 5px;"> <b>기존 단가</b><br/>(25,000원/EA)         </div> <span style="margin: 0 10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 <b>원재료 변동가격*</b> (2,000원/K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 <b>원재료 중량</b> (2Kg/EA)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 <b>반영비율</b> (100%)           </div> </div>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font-size: small;"> <p>* 원재료 변동가격(2,000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2,000원/Kg) -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0,000원/Kg)<br/>           ** 동(銅)을 제외한 원가 구성 내역의 금액은 5,000원으로 가정</p> </div> |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실무

### > [납품단가 변동표]의 활용 방법

-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된 납품단가를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호 확인취지로 서명·기명 날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
  -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25,000원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10,000원/kg

|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 수탁기업 확인 |
|-------------|----------------|----------|---------|---------|
| 2023년 2월 1일 | 12,000원/kg     | 29,000원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2023년 3월 1일 | 13,000원/kg     | 31,000원  | 서명·기명날인 | 서명·기명날인 |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조정된 납품단가) 산식에 따라 조정된 납품단가를 확인